

〈 23-24년 시행 주요 법령 개정사항 〉

개정 법령명	개정 전	개정 후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	국무총리 소속 정보공개위원회	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
정부조직법	문화재청	국가유산청
정부조직법	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<u>정보·보안 및 범죄 수사</u>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.	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(범죄수사 삭제).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		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	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……	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(역량 교육 삭제,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).
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	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한다. 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	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,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한다. 다만,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, 중, 하로 평정할 수 있다. 1. 소통·공감 :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. 헌신·열정 :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. 창의·혁신 :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. 윤리·책임 :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<p>공무원임용령 승진소요최저연수</p>	<p>1. 일반직공무원 가. 4급 및 5급 : 4년 이상 나. 6급 : 3년 6월 이상 다. 7급, 8급 : 2년 라. 9급 : 1년 6월</p>	<p>1. 일반직공무원 가. 4급 및 5급 : 3년 이상 나. 6급 : 2년 이상 다. 7급, 8급 및 9급 : 1년 이상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(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)</p>	<p>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71조 징계의 효력</p>	<p>신설</p>	<p>강등(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 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 한다),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 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.</p>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</p>	<p>음식물 : 3만원</p>	<p>음식물 : 5만원</p>
<p>지방자치법 제47조의2 (인사청문회)</p>	<p>신설</p>	<p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 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 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 장·부지사 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 장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>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</p> <p>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